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가. 경북청년예술촌 준공에 따른 성주생활문화센터 업무 추가

나. 생활문화센터 업무수행 운영 규정 사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성주생활문화센터 업무 및 기능

1) 경북청년예술촌 운영 규정 추가(제3조제4호)

2) 성주생활문화센터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규정 신설(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2) 입법예고(2022. 1. 17.~2022. 2. 6.) 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북청년예술촌 프로그램 운영

② 성주생활문화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 및 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신 설>	제3조(업무 및 기능)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경북청년예술촌 프로그램 운영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성주생활문화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라. 작성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김 미 순